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341호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.
2.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015년 12월 30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|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 취소일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- KTB글로벌스타증권투자회사(주식)            | 2015.12.30            |
| - 동양하이플러스오토스탁30증권투자회사2호(채권혼합)   | (통보일 :<br>2015.12.14) |
| - KDB코리아베스트고배당30증권투자회사제1호(채권혼합) |                       |